

연구논문

페미니스트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의미와 과제*

이나영**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심각하고 피해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에 착목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사실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당사자들이 비존재할 순간을 기다리는 시점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기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론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 먼저 영의 정치적 책임론의 의미를 파악하고 책임에 관한 연결모형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적인 죄가 추궁당하지 않을 때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오히려 확장되어 왔기에, 법적·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정치적 책임의 층위론적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아이리스 영, 정의론, 정치적 책임, 페미니즘

*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7356).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nylee@cau.ac.kr)

© 201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필자는 일본군 성노예제¹⁾ 문제를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정의론에 근거해 고찰해 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식민지 시기 저질러진 부정의의 역사와, 이에 대항해 포스트식민의 정의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의 역사라는 두 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소’라는 제도의 역사와 30여 년 간 진행된 국내외 운동이 양축에 놓인다. 피해 당사자들의 체험 또한 식민지 부정의와 포스트식민 사회를 통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초국적 활동을 통해 확산된 운동 당사자들, 참가자들의 체험도 포스트식민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논쟁에 개입한 수많은 수행집단들의 각축과 입장 차이, 시기와 맥락의 차이 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파편화된 채 기억되거나,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한국에도 출간된 『대화를 위해서』 중 우에노 치츠코(上野千鶴子)는 한국의 ‘위안부’ 운동을 민족주의 운동으로 비판한 반면, 『제국의 위안부』를 포스트콜로니얼 페미니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그간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가 과녁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유하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과제를 우리 앞에 내밀었다”고 주장한다(우에노, 2017: 238). 그간 한국은 물론 일본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김부자, 2008; 송연옥, 2008; 양현아, 2006; 이나영, 2010; 2016b) 탈식민지 관점에서 성노예제 문제와 운동을

1) 이 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성노예(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한 것과 같은 연유다. 유엔에 의해 공식 정의된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이라는 표현을 직역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그간 학계나 운동계 모두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문맥에 따라 병기하고자 한다.

평가해 온 방식과 배치되는 이 장면은 사실상 정치적 이론적 논쟁이라기 보다 운동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로 이론을 동원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들의 논리구조를 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대한민국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 식민지를 겪고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체제에서 억압되어 왔던 한국의 여성들은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단체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윤락(淪落) 행위’로, 성폭력을 ‘(여성)정조(貞操)를 잃은 것’으로 인지하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 폭력에 관한 언어를 바꾸고, 관습으로 혹은 문화로 당연시되던 남성 중심적 실천들에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단단해 보이기만 하던 권력에 도전하며 보편적 남성-주체/여성-대상 간 경계를 허물고, 성차별적 구조를 혁파하는 이 여정(旅程)의 핵심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이 있었다(이나영, 2017). 1990년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정대협의 활동가들은 ‘최신 판본’의 서구 이론이나 거창한 사상의 수입과 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들의 고통과 마주하고, 감추어진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인간존엄성과 정의를 회복하는 작업에 앞장서 왔다.²⁾ 정치와 역사, 우리 사회전반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고함은 물론, 인종, 민족, 계층의 상호작용에 따른 여성경험의 차이를 드러내고, 남성중심의 협소한 정의론에 도전해 왔다.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 정의론 등은 한국의 운동 현장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정의론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어떤 연결지점을 가지는지

2) 정대협의 설립 과정과 의미에 관해서는 이나영(2010; 2016a; 2017)을 참고할 것.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 26분 남았다는 사실이다.³⁾ 그 중 많은 분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거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일본정부가 바라는 바 피해당사자들과 직접적 가해자들이 더 이상 현실 공간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떤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개별적 불운이나 잘못된/자발적 선택이라는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유지하고, 한국정부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듯하지만 기실 모순적으로 문제의 주변만을 맴돌며 외교적 수사로 ‘관리’해 왔다. 곧 도래할 포스트위안부의 시대에 법적/도의적 책임이라는 양국의 이분법적 구도는 적절한 것인가. 아이리스 영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 같은 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에서 ‘내부의 외부인(outsider-within)’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필자의 15여 년 동안의 참여관찰과, 피해당사자, 활동가들과의 이야기가 겹겹이 얽힌 체현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흑인 페미니스트 페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 2000)가 백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들이 지니는 독특한 이중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내부의 외부인 위치’는, 연구자-활동가로서 고유의 관점을 가지되 주변적 위치에 있는 필자의 정체성을 지칭하기에도 적절한 용어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미군 기지촌,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문제에 천착해 온 필자의 관점

3) 2018년 한국정부에 새롭게 등록된 생존자 1인을 포함해 2018년 12월 5일 현재, 26명이 생존해 계시다. 이 글을 수정하고 있는 오늘(2018년 12월 5일), 또 한분의 생존자이신 김순옥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대면하고 참여하게 되면서 변화하고 성장해 왔기에 독특하지만, 동시에 운동의 핵심은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소외된 영역에 위치해 있기에 주변적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외치며 오랫동안 거리에 섰던 활동가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좌절과 작은 희망, 나눠서 배(倍)가 되는 행복한 감정들과 헌신하는 삶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가들은 물론 피해당사자들이 변화하고 이들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 또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도 보았다. 피해자가 말할 수 없던 포스트식민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가능성도 보았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의 부당한 대응과 심각한 오해, 오독이 모욕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목도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과제로 계승할 것인지 고민하는 활동가,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도 지켜봤다. 그러한 필자의 독특한 위치성에 근거한 현장 체험과 지금도 진행 중인 국내외 활동가들과의 대화의 과정이 이론적 논변에 내포되어 있음을 밝힌다.

2. 아이리스 영의 정의론과 정치적 책임

아이리스 영(2013)은 개인의 과실이나 불운, 선택의 책임으로 혐애화하는 법적 책임 모델을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모델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정의의 문제는 개인의 특정한 삶(선택, 불운 등)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취약한 사회적 위치(position)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구조적 부정의란 “개인의 행위와 제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된다(영, 2013: 106).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객관적 제약과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행위로 생산되는 구조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영에 따르면, “타인과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에서 흠잡을 데 없

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지위를 가지고 취할 행위 때문에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135)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부정의를 약화시킬 구조적 변화를 바랄 수” 있게 된다(134).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일정부분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political responsibility)을 진 자가 된다.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게 상당히 빛지고 있다. 아렌트는 일찍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인 우리 모두는, 잘못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기에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과 구조적 부정의의 책임자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게 정치적 책임이란 한 국가안의 공통 성원성과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수용하는 데서 나온다.

개인은 그들이 행한 것에 기초해서만 비난을 받고 죄를 추궁 당한다.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의미에서 자아에 관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책임은 세계의 질서에 관여한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통에 주목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선조의 죄는 지속적인 결과를 낳으며, 우리가 그 지속되는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만큼 우리는 선조의 죄에 책임이 있다(Arendt, 1968; 영, 2013: 145).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한나 아렌트(Arendt, 2006)는 유대인 대량학살에 ‘비의도적’으로 관여한 독일인 아이히만의 사례를 들어 “악의 평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및 독일 점령 하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

인들을 체포하여 강제이주를 계획하고 지휘했던 인물이다. 아렌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그 일을 했다는 현실과 다른 이들이 행할 수도 있었다는 잠재성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아이히만을 유죄라 주장한다. 인간의 조건을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위협하는 방식을 형상화한 나치수용소를 통해 아렌트는 “민주적 대중사회”에 내재하는 일종의 “원형적 전체주의적 결정체들 혹은 준전체주의적 결정체들”을 발굴해 낸다. 시공간을 넘어 ‘우리’와 ‘그들’ 간의 “심층적 공통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논의는 계시적이었다(프레이저, 2010: 219-231).

아렌트가 주목한 주요 지점은 평범한 개인으로서 아이히만이다.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반면, 상사의 명령에 의심하지 않고 복종하는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무능력함”(Arendt, 2006: 106)의 이면에 오로지 자기 자신, 자신의 지위, 경력과 가족에만 관심이 있는 평범한 사람. 아렌트는 이들을 “가족 남성(family men)”이라 부른다. 결국 그 평범성이 부분적으로 아이히만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순전한 무사유” 상태가 저지른 범죄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391-392). 어렵고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정치, 사회적 상황이 주는 압박감과 불안이 극심한 현실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만 보장된다면 거의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자기도 모르게 악의 세속적 구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아렌트는 이미 오랜 전 경고한 것이다. 결국 빈번한 전쟁과 참혹한 학살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빌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의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운명이라는 더 광범위한 함의에 무관심한 채 자기 일”만 기꺼이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영, 2013).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구조적 부정의의 공모자라면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아렌트는 죄와 책임을 구분하고 정치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난국을 돌파한다. 그는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성원인 우리 모두는, 잘못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죄인은 아니니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움),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과 구조적 부정의의 책임자라고 지적한다. 앞서 인용했듯, 아렌트는 “집단적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도덕적·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한다.

이에 아이리스 영(2013)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책임에 대한 개념적이고도 실용적인 논변을 제시한다. 그에게 “죄는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자, 혹은 행위를 통해 범죄나 잘못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책임은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도록 정부나 제도, 혹은 실천을 능동적, 수동적으로 지원한 경우에 속한다(165). 그러므로 “범죄행위(죄)는 도덕적, 법적 영역에 속하고, 동조와 저항(책임)은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 영은 법적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의를 위한 공유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 주장한다. 그는 구조적 부정의를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의 도구를 박탈당하거나 조직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이 다른 이들에게는 (역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는”(Young, 2006: 112)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영의 주장은 기실 1990년 그 유명한 저술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지배와 억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정의관에서 출발한다. 영은 ‘분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의론을 논파하면서 ‘지배’와 ‘억압’이라는 부정의가 존재하는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은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라는 다섯 가지 억압의 범주를 제시하고, 이것들이 복잡하

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실을 짚는다. 그리고 지배와 억압을 최소화시키는 것, 곧 ‘자기 결정’과 ‘자기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⁴⁾ 그에게 억압은 “어떤 집단을 무력화하거나 폄훼하는 구조적 현상”이며(영, 2017: 110), 지배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또는 행위 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제도적 조건이다(99). 따라서 억압과 지배의 개념은 겹치기는 하나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억압은 지배를 포함하거나 함축하나 지배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금제들을 포함한다(99-100).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인지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정의롭기’의 출발이라는 사고는, 이후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변으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법적 책임 및 정치적 책임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2013)은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이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173).⁵⁾ 구조적 부정의에 책임진다는 의미는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위 결과를 덜 부정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조적 과정을 변형시킬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기에(174) 과거 회고적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이다. 공유된 책임에 대한 인정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배경조건도 평가의 대상이 되게 하며, 따라서 책임 부여의 목적도 미래지향적인 것이

4) 영은 정의의 두 가지 가치와 부정의의 두 가지 측면(제약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곧 자기 발전이다. 이에 대한 제약이 억압이다. 둘째,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데 참여하며, 또 자신이 행동하게 될 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 결정이다(영, 2017: 98). 이를 막는 것이 지배다.

5) 첩언하자면, 영은 “개인은 행위를 통해 부정의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구조적)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의와 관련된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하는 다양한 제도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임은 본질적으로 공유된다고 주장한다(2013, 184-185).

된다. 단순한 개별적 분노와 개인이 저지른 죄의 물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덜 부정의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제도와 과정을 바꾸는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책임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면제될 수 있다”(185). 이는 특정행위자(가해자)와 국가에만 방점이 있는 기존의 법적 책임 모델 내에서 변형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공모와 무지, 회피와 외면이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로 확대되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책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정치적 책임이란 과제는 달성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한다. 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네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첫 번째, 물화(objectification)로 부정의가 생산되는 과정을 마치 자연적인 힘처럼 불가피하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인 양 가정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259) 핑계를 댄으로써 부정의의 과정은 물화된다. 둘째, 연결을 부정하는 것(denying connection)이다. 피해 입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연결성을 부정하는 것으로(264), 타자와 자아간 절대적 거리감과 단절을 상정하는 행위다. 셋째, 직접성의 요구(demand of immediacy)다. 상대방의 사람들은 추상적 연결성은 인정하되 그들에게 줄 자원(시간, 관심, 에너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69). 그러므로 영은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구적 정의를 위한 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타자를 개인적으로 대할 때 쏟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곧 정의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책임에 쏟는 관심과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270). 넷째, 내 일이 아니라는 태도(not my job)다. 부정의를 인정하고 누군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다(276). 이들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거나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81). 이러한 변명은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거시 사회적 과정과 연결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보여 준다”(283).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의 과제를 집단 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우리 모두는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권력을 소유한 (특권계층의) 행위자는 구조가 현상 유지되는 데서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조가 변화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폭로해야 한다(247). 둘째,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가 중요하다. 당사자들은 “사람들이 겪는 특정 고통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발생한 부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을 가진 사람이 실제 과정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해야 한다(248).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정의를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이때 제3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권력과 이익을 둘러싼 투쟁에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48). 이를 통해 영은 구조적 부정의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끊기 위한 포괄적 노력이 다각도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다. 영은 국가와 국제기구 또한 구조적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나 국제기구의 “규칙과 관행은 부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을 생산하거나 영속화하려는 권력자나 과정”에 더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도는 종종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전적으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한다(250-251).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일방적인 결정권을 주어서도,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

다. 정부기구나 국제기구는 구조적 과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투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보다는 투쟁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공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별 주체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동질적인가? 영은 부정의한 구조에 특혜를 누린 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책임은 과거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 값’의 차원을 넘어 부정의를 시정할 구조적 변혁의 책무다.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부정의한 제도와 사회 관습을 좀 더 정의롭게 변혁할 책임은 그러한 부정의한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이가 동일한 종류의 책임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조 안에서 그리고 구조 덕분에 특권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영, 2013: 308).

영은 미국 시카고시의 노예무역이나 노예 착취와 연관된 배상 논쟁을 소개하면서 특정 기업을 비난하려는 목적보다는, 공적 토론을 촉발함으로써 현재의 구조적 부정의(인종 차별과 불평등)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 개입의 촉진 가능성에 주목한다(303). 그는 인종 차별이라는 구조적 부정의를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306).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인종차별적인 구조의 수혜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특권이 역사적 부정의에서부터 계속된 것임을 인지하며, “특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변혁하는 일에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도덕적·정치적인 특수한 책임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08). 즉 우리 모두는 부정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되, 부정의로 특혜를 누린 집단의 보다 큰 책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은 비록 바로잡지 못한 과거의 부정의는 환원 불가능하지

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기억으로 부정의를 개선해야 할 현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때 과거와 연결된 현재적 책임은 과거의 부정의가 지닌 사실성을 직면하면서 역사를 (다시) 기술하고, 미래 세대의 역사적 상상력을 재고하는 일이다.

바로잡지 못한 과거의 부정의는 환원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현재의 우리가 부정의가 지닌 사실성에 직면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 우리는 과거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집단적 과거는 죽은 세대의 역사지만 우리 자신의 역사로 이어진다. ... 그러나 역사적 부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기억으로 그 부정의를 개선해야 할 현재적 책임을 발생시킨다. 현재의 우리에게는 과거를 서술하는 방식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 ... 현재의 부정의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는 자신의 역사적 상상을 재구성해야 한다(영, 2013: 302-303).

3. 일본군 성노예제와 역사적 부정의: 영의 정치적 책임론을 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이상과 같은 아렌트와 영의 주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있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부정의의 영역과 종류, 확장된 책임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 환기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단순화하지 않고, 식민지와 포스트식민의 구조적 부정의를 양산하는 사회적 위치의 복잡한 배열을 사고하게 한다. 특히 국가기구에 의해 조직된 행정적인 범죄의 속성,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며 일상에 충실한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포괄적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성노예제 논의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가해자/피해자, 강제/자발, 동기/비동기, 공창/강간소, 도덕적/법적 이분법을

중심으로 한 범죄의 속성, 인정과 책임의 범위, 사죄와 배상의 주체 및 대상, 내용이라는 이분법적 논쟁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죄와 구분된 정치적 책임을 생점화함으로써 얻는 효력은 첫째, 타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무사유의 죄를 저지르는 우리 안의 아이히만들이 포스트식민 이후에도 곳곳에 산재하며, 이것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재생산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군 성노예제 운동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행집단으로 등장했던 정치적 책임의 주체들이 가해자의 수행집단과 피해자와 동행했던 수행집단으로 양극화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가해자편에 섰던 수행집단들은 진실의 부인과 재현의 폭력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김명희, 2017). 셋째,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끝났다고 말하며, 이른바 ‘속죄기금’을 통해 ‘도덕적’ 책임을 진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영의 논의를 적용하면 법적 책임과 연결된 도덕적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가해자 서사의 맹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결국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본의 ‘도의적 책임’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담론적 장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위자들에 대한 영의 폭넓은 고려는, 정치 지도자, 군부 지도자, 기업가 등 식민 지배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의로 인한 결과에 더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비난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일본군 ‘위안소’ 설치(지시), 위안부 모집과 강제 동원, 운송, 위안소 운영, 관리, 감독, 위안소 내 강간, 각종 폭력, 강제 낙태, 유기, 살해 등의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본 군인들과

정부 관료들, 천황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모두 법적·도덕적 책임자들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들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한 전후 보상 책임을 지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정당하다.⁶⁾ 일본 시민들 또한 부정의한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거나, 제도운영의 수혜자이기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의 전후세대는 일본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향유하고 그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이재승(2015)의 지적처럼, “일본 시민은 선대의 과오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제도가 야기한 결함까지 시정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된다(25). “부정의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사실조차 부인하는 정부를 변화시켜 책임을 인정하고 구제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행동해야” 한다(25). 바로 이것이 비록 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없어도 일본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인 것이다.

한국정부와 시민들은 어떠한가? 식민지 시기 일제에 동조하여 부정의한 제도(인신매매 제도와 ‘위안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조선인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임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해 온 시민들, ‘2015 한일합의’의 주체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6)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은 전 원합의제(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로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1965년 청구권협정은 불법 식민지배 배상 청구 협상이 아닌 한-일 양국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가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한겨레신문』, 2018.10.30).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 영에게 법은 어떤 개념인가. 법적·도덕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엄격히 분리 가능한가. 미래지향적인(forward-looking) 정치적 책임과 달리, 법적 책임 - 특히 미청산된 과거의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것 - 은 과거 회고적(backward-looking)이기만 한가.

전해정(2016)은 아이리스 영의 주장에서 “법의 개념을 비실증주의 관점으로 확장한다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간 연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법 개념에는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적 접근이 있는데, 전자는 존재하는 법, 즉 유죄와 무죄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보며(183), 후자는 조문화된 규칙에 포함된 원리와 그 배후에 있는 원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법 개념을 전개한다(185). 비실증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이 법 개념 요소로 삼는 “규범의 합법칙성,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강제가능성 이외에 규범의 내용적 정당성, 실질적 정당성”까지도 법 형성의 주된 요소로 삼기에 법의 내용이 너무나 부당하면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으면 법이 아니라고 본다. 비실증주의적 접근에서는 법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법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이념과 정의에 관한 물음으로 확장하며, 현실에서 만족스러운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법적 효력도 문제 삼는다(185).

전해정은 영의 사회적 연결모델과 비실증주의적 법 개념을 결합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실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이 기존의 법실증주의적 법학 방법론의 왜곡된 판단을 시정하고자 도입한 ‘강한 객관성 모델’과 연결되며,⁷⁾ 아이리스 영이 제시한 사

회적 연결모델을 법 추론 과정에 적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191).

같은 관점에서 그는 박유하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제국 당시 법의 이
 름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매몰되어 있
 다고 비판한다.⁸⁾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법의 내용
 과 효과가 정의에 반하고 법의 근본원리에 명백히 반한다면 “그 법은 법률
 적으로 불법으로 효력이 없고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198). 그는 명백히
 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적용 결과가 부정의함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의와 인간존엄이라는 근
 본사상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본이 져야한다고
 주장한다(199). 결론적으로 전해정은 정의(正義)라는 법의 이념과 실정법
 이면에 자리하는 법 원리를 수용하는 비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아이리스 영이 주장한 젠더 정의에 기반한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접합한다면 일본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추궁 가
 능하다는 것이다(192, 200).

덧붙여 필자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2013)의 주장에 동의
 하며, 과거회고적 부분과 미래지향적 부분의 엄격한 구분이 실제 어려우
 며, 과거를 비판하지 않고 미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 또한 과거 회고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
 향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승(2015)의 지적처럼, “법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도덕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보강할 수는 있으나 대체

7)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2009)은 지배집단의 관점을 반영한 객관성은 약한 객관성
 이며, 여성 등 사회적 타자들의 삶을 통한 지식 탐구는 강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라 주장한 바 있다.

8) 이재승(2015) 또한 박유하의 논지를 “식민지 합법주의”라 비판하고(22), 강제동원이나 ‘위
 안부’ 연행과 같은 식민지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할 수는 없다.” 이를 무시한 채 “모호하게 도덕적 책임만을 강조하거나 우선시하는 것은 규범적 타락”을 의미하기 쉽다(25).

아직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공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인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일본과 한국의 아이히만들은 공히 타자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없었기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추포조차 되지 못했다. 일본 천황은 식민지와 전쟁 책임을 진 가해자로 인지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진 적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한 적도 없다. 기본적인 법적 책임조차 부인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논리는 법적 죄와 책임의 우선성을 명확히 하는 층위론적 접근이라 생각한다. 층위론적 차원은 법적 책임을 기층으로 두고 그 위에 도덕적, 정치적, 전승된 역사적 책임 영역이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피라미드, 또는 동심원적 자기장 구조를 의미한다.⁹⁾ 죄에 대한 법적 청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한 채 확장된 책임의 영역에 대한 성찰을 결합해야만, 위로부터 아래로, 혹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책임의 하향적 인과작용(downward causation)을 드러낼 수 있다.

일본 천황을 비롯해 범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자들, 직접적으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를 자들, 이를 실행 가능하게 도운 자들, 이로 인한 효과에 각종 혜택을 받은 이들, 그리고 추궁당하지 않은 법적 책임 뒤에 다가올 미래 세대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층위별로 각기 다른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범죄의 직접적 가해자들과 동조자, 공모자들이 살아 있는 한 끈질기게 법적 책임과 동시에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특정 집단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동일한 구조의 혜택을 입고 있다면 도덕적,

9) 이는 김명희 교수가 2016년 한 학회장에서 필자의 논문에 대한 건설적 토론자로서 제시해 준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정치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포스트위안부의 시대에도 유사한 부정의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세대는 과거 일본의 범죄 사실에 대한 개별적 분노나 모호한 수사적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괄적 젠더 정의를 향한 변혁적 실천을 지속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승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다.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자체는 물론 전 세계 전시 성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4. 미(未)청산된 법적 책임과 확장되는 정치적 책임

분명한 점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궁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은 넓어지고 있다는 역설이다. 저질러진 죄와 법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denial)이 지속되고, 심지어 범죄행위 자체가 왜곡되고 역사적 부정의의 청산이 계속 연기될 때, 과거의 잘못은 현재적 부정의로 재생산된다. 식민지 전쟁 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의 부인, 죄를 법적으로 추궁당하지 않은 가해자들의 또 다른 가해 행위가 역설적으로 공동체의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확장시켜 놓은 형국이 된 것이다. 이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해결이 장기화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박유하(2013)의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들 수 있다. ‘문제’가 아니라 ‘사태’라 명명한 이유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왜곡과 운동의 폄하,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조류와 연관된 텍스트를 둘러싼 내적 논쟁이 한 축이라면,¹⁰⁾ 다른 한 축은 박유하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건과 연관된다. 학문적 논쟁과 사법적 논

10) 박유하 책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강성현(2016), 김명희(2017), 김부자(2017), 이재승(2015), 정영환(2016) 등을 참고할 것.

쟁이 얽혀 혼란스러운 형국이 만들어졌고 한일 지식인 사회의 분열의 내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¹¹⁾ 운동사의 차원에서 문제적인 이유는 총체적인 운동 맥락과 과정에 무지한 대중과 국내외 연구자들은 박유하가 정대협에 의해 고발당했고, 이에 동조하는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위안부’ 운동 전체를 박유하식의 논조로 비판하는데 동참해 왔다는 점이다. 박유하를 지지하는 일본 학자들은 심지어 ‘도그마’에 빠진 지원 단체와 연구자들이 ‘대화’가 아니라 (박유하 개인에 대한) ‘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니시, 2017: 8-9).

2015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한일 외교부 수장 간 구두 합의 발표는(이하, ‘2015 한일합의’) 그러한 경향을 증폭시키고 문제를 가중시켰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1) 일본정부는 ‘책임’과 아베수상의 ‘사죄’를 표명하며, 2) 한국정부가 출연하는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3)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4)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¹²⁾ 이러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의 본질을 외면하고 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무지한 대리인 한국정부와 가해자 일본정부가 감행한 ‘야합’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창록, 2016; 양현아, 2016; 이나영, 2016a). 한국정부는 피해 여성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졸속으로 사태를 봉합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합의 이행 조건 중 하나인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을 받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김태현

11) 피소와 재판과정에 대한 논의는 김명희(2017)을 참고할 것.

12) “한일 양국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일본측)(김부자, 2017: 297).

재단이사장이 100만원 출연금으로 2016년 8월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사상 최초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일본정부가 책임인정과 사죄, 이행조치를 약속했다며 사실을 왜곡해 왔고, 심지어 ‘위로금’ 수령 중용을 위한 피해자 회유, 협박 등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¹³⁾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며 내적 분열을 자초하고, 운동을 좌초시키고자 한 우리 안의 아이히만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는 페미니스트 정의론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 회피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 영(2013)은 부정의가 생산되는 과정을 마치 자연적인 힘처럼 불가피하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인 양 가정하는 “물화(objectification)의 방식”(259)과 피해 입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연결성을 부정하는 것(denying connection)”(264)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 ‘화해’론의 틀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정대협이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봉쇄한 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된다. 한일 외무장관 ‘합의’를 둘러싼 일본 미디어의 환영 양태 또한 ‘제국의 위안부 사태’라는 ‘화해’ 프로젝트의 필연적 결과였는지 모른다(정영환, 2016: 172-173). 이에 ‘2015 한일합의’ 이후 일본의 상당수 리버럴들은 한일합의를 양국 간 화해의 시도라 보고, 이에 반발하는 〈정대협〉 중심의 운동이 민족주의 성향에 매몰되어 있다는 박유하의 주장을 확신하기도 했다. 실제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정대협은 어느새 ‘민족’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 힘은 절대적”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면서(211) “정대협의 힘”이 “대통령도 이길 만큼” 강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213). 한일 양국 간 ‘화해’를 막는

13)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6월 13일에도 이사회를 열어 현금 지급 심의의결 7건을 완료하고 일부 1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선전한 바 있다(화해치유재단, 2017).

가장 큰 걸림돌로 정대협을 지목해 온 것이다. 그러기에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 <나눔의 집>과 마찰을 겪으면서까지 형사 소송에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은 박유하 피소의 ‘주적’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한국의 운동단체가 박유하 ‘사태’와 ‘2015 한일합의’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2015 한일합의’의 ‘조건’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제시된 ‘소녀상’ 철거와 이를 둘러싼 논쟁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일본 우익들은 물론 박유하와 그를 지지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소녀상’을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수난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적 표상이자 “정신대를 위안부로 착각해” 한국이 만들어 낸 이미지로 “한일 갈등의 촉매제”(박유하, 2013: 50, 168), 혹은 여성을 정절이데올로기에 가둬 두는 “일면적 피해사자의 조형물”로(최범, 2017)¹⁴⁾ 비판해 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단은 일본정부가 왜 그토록 ‘소녀상’에 집착하는지, 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소녀상이 ‘2015 한일합의’ 이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는지 설명하지 못한다.¹⁵⁾ 정영환(2016)의 지적처럼, 피해자의 목소리 자체를 묻고 싶은 일본의 무의식적 욕망의 발로로 “일본정부의 반성과 회개, 법적 배상을 기다리고 있는” ‘소녀’의 모습 그 자체를 불쾌하게 느끼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22-23). 일본 측의 이러한 감정은 다양한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소녀상’의 의미가 수용자의 관점을 통해 달라지고 계

14) 해당 논문들의 발표장인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는 2014년 6월 박유하 씨에 대한 나눔의 집의 고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https://www.facebook.com/radicalthird/posts/866399986775806>(검색일: 2015.6.20). 이 단체는 2017년 3월,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으며(<http://opengov.seoul.go.kr/sanction/11619482>, 검색일: 2017.7.1), 박유하씨를 지지하는 한일 양국 학자들의 글을 모은 책 『대화를 위해서』의 한일 동시 출간 기념행사 차원으로 「위안부 동원과 재현의 정치학」이라는 심포지엄을 지난 7월 1일에 개최한 바 있다. 본 글은 당일 발표문 중 하나다.

15) 2018년 10월 현재, 소녀상을 비롯한 평화비(기림비)는 국내 109개, 해외에는 23개가 건립되어 있다(정의기억연대 직접 자료 제공).

속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부자(2017)는 소녀‘상’이 아니라 ‘소녀’에 집착하면서 소녀상을 순결주의나 반일 내셔널리즘과 연결해 비판하는 일본의 지식인들과 페미니스트로 자처하는 이들은 일본의 가해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탈진실의 아카데미즘’의 발로라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필자가 이미 다른 논문을 통해 밝혔듯(이나영, 2017), “사라진 유령, 혹은 예외적 개인이 아닌 집단적 여성 주체로서 ‘위안부’의 존재를 형상화한 ‘소녀상’은, 역사 속에 숨겨진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관통하는 젠더 부정의의 표상”이다(89-90). 10-20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요시위에 대거 참석하는 이유다. 이들은 먼 곳에 존재했던 “타자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시공간을 넘어 공유된 여성경험에 주목하며 ‘피해자성’의 의미를 환기하고 새로운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89).

미투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나는 ‘위안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다. 요즘 시대에는 ‘with you’를 외치며 함께해 줄 수 있는데 할머니들 시대에는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위로해 주고 풀어주기보다 모두 창피해했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돈 벌러 자진해서 간 건 아니나라는 말들만이 할머니들께 돌아왔다. 너무도 안타까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해야 한다(양소정, 2018).

한 여고 2학년생의 고백처럼 소녀상과 조우하는 이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석화된 과거의 침전물이 아니다. 살아있는 할머니의 용기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환기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들

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미래로 나가는 행동에 대한 결심의 원동력이다. 그러기에 ‘소녀상’은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 뿐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한 내적 가해의 역사 및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환기하는 내적 성찰의 매개물”이자(이나영, 2017: 90), 기꺼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승하고자 하는 시민 상징물로 그 의미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베 정권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폭력의 사실과 피해자의 경험은 물론,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인(否認)하고 “내 일이 아니라는 태도(not my job)”(영, 2013: 276)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남성’의 전형적 행위로 비춰져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김부자(2017)가 지적했듯, 일본정부와 남성들이 소녀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본의 남성중심성과 지속되는 식민주의적 사고(전쟁과 가해책임 부인)를 역설적으로 환기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범죄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녀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낀 자기방어적 기제라는 것이다(310).¹⁶⁾ ‘전국 고등학교 작은 소녀상 100개 건립 운동’을 한국의 여고생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¹⁷⁾ 이들은 2018년 10월 현재, 전국 학교의 학생회와 동아리 등 학생모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나비 전국 행동’을 조직해 대항적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정의기억연대, 2018). 아베 총리가 ‘미래세대가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한일합의를

16) 다른 측면에서 문경희(2016)는 ‘위안부’ 생존자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한 『꽃할머니』의 출판이 일본에서 출판되기 어려웠던 과정을 분석하면서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본 남성중심사회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17) ‘작은 소녀상 세우기 운동’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 <주먹도끼>가 2016년 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다. 2017년 6월 21일, 현재, 1년 1개월 동안 100개 건립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으며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 확대해 갈 예정이다라고 한다. <주먹도끼>는 소녀상 건립 프로젝트 기간 중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한 5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의 ‘할머니와 손잡는 20만 동행’에 기부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17.6.21).

감행했다는 주장은 그래서 역설이 된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범죄행위로 미래세대는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은 아이리스 영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모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사유하고자 했다. 아베 정권이 지속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을 돌파하면서 피해당사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필자는 아이리스 영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난국을 돌파하려 했다. 영의 정치적 책임론과 책임에 관한 연결모델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전승된 책임을 환기하는데 적절하다. 영의 논변에 따르자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수사적 차원으로 동원되는 도의적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닐 뿐 아니라,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부정의를 생산하고 이에 혜택을 입은 시민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법적인 죄가 추궁되지 않을 때, 선조들의 미(未)청산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를 사는 시민들에게 부과된 책임의 영역은 심지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법적·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정치적 책임 모델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성찰과 교정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구조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우는 잠정적 개념이자 관념적 실체이다. 우리는 막 과거가

되어 버린 현재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유동하고 있지 않은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공히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대면하게 해야만 이에 따른 책임의 영역도 명확해 질 것 아닌가.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는 과거 식민지와 포스트식민의 부정의로 인한 가시적/비가시적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성찰은 공동체 성원들이 국가가 과거에 (공동체 내외부에) 저지른 부정의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및 요구되는 배상을 제공할 책임(liability)에 대한 인식 없이, 정당하게 혜택을 누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 때 배상(redress)은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초국적 정의(global justice) 구현에 필수적 과정이 된다.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는 아직 법적 책임을 지지도 진정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못한 구조적 부정의로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할 의무를 진다. 무관심이나 외교적 수사 등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재생산한 책임 또한 무겁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사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2016년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중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항목에 포함되었던 연구소는 2018년 8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기존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기념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등 9억 3천 만 원으로 연구소 기금을 마련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위탁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연구소를 설치했다.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을 보장하고, '위안부'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학술연구 기관으로 세우겠다는 애초의 약속과 달리 여가부 산하기관 소속 기구라는 초라한 형태와 내용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초대 소장(김창록 교수)이 3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다 한다.¹⁸⁾ 이러한 상황은 1990년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설립과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 등 생존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세계적인 이슈로 확장하면서 전시성폭력 문제를 환기해 온 운동의 역사에 견주어 볼 때, 너무도 초라한 수준의 정부 인식과 자세를 방증한다 할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은 물론 확장된 정치적 책임까지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교적 수사로 이 문제를 관리해 왔음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된 기획 하에 법적 근거와 예산, 인력을 확보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잔혹함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세계사에 남을 운동의 역사를 계승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의 시정을 요구해 온 피해당사자들과, 공적인 논쟁을 촉발하면서 구조에 균열을 내 온 시민들의 요청에 대해 적절한 응답하는 일은 “구조적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가 (영, 2013: 250)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 미래 또한 특정 국가의 시민들만의 것은 아니다. 세계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양국의 시민들은 법적·도덕적 책무는 물론, 지금도 확장되고 전승되고 있는 정치적 책임까지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에 비로소 균열과 변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를 통한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수평적 연대와 ‘화해’ 또한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것이다.

18)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2018.12.10) 이대호 기자의 “출범 석 달 만에 위기 맞은 위안부 문제 연구소” 기사를 참고할 것.

참고문헌

- 강성현(201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과 해결: 『제국의 위안부』의 비판적 독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언”, 『황해문화』, 제91호, 255-298쪽.
- 김명희(2017),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235-278쪽.
- 김부자(2008), “‘위안부’ 문제와 탈식민주의”, 『역사와 책임』, 서울: 선인, 119-147쪽.
- _____ (2017),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279-322쪽.
- 김창록(2016),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창록·양현아·이나영 외(2016), 서울: 경인문화사, 47-82쪽.
- 누스바움, 마사 C.(2013), “여는 글”,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리이스 M. 영 지음,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옮김, 서울: 이후, 8-34쪽, Young, I. M.(2011),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니시, 마사히코(2017), “머리말”, 『대화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물음을 펼치다』, 아사노 도요미·도고 가즈히코·도노무라 마사루 외 지음, 송태욱·배승주·최순애 외 옮김, 서울: 뿌리와이파리, 5-10쪽, 浅野豊美 編集(2017), 対話のために「帝国の慰安婦」という問いをひらく, 東京: 図書出版クレイン.
- 문경희(2016), “꽃할머니의 ‘위안부’ 재현과 감정의 정치”, 『젠더와 문화』, 제9권 2호, 173-209쪽.
- 박유하(2013),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투쟁』, 서울: 뿌리와이파리.
- 송연옥(2008), “식민지 여성과 탈제국의 페미니즘”, 『역사와 책임』, 서울: 선

- 인, 440-461쪽.
- 양소정(2018),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와 미투 운동,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시민모임 공개강좌』 자료집(공개강좌, 2018.8.25) 미간행.
- 양현아(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133-167쪽.
- _____ (201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창록·양현아·이나영 외(2016), 서울: 경인문화사, 11-43쪽.
- 영, 아이리스(2013),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허라균·김양희·천수정 옮김, 서울: 이후, Young, I. M.(2011),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서울: 모티브북, Young, I. M.(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우에노, 치즈코(2017), “『제국의 위안부』의 탈식민주의”, 『대화를 위해서』, 서울: 뿌리와이파리, 236-251쪽, 浅野豊美 編集(2017), *対話のために「帝国の慰安婦」という問いをひらく*, 東京: 図書出版クレイン.
- 이나영(2010), “일본군 ‘위안부’ 운동”, 『아세아연구』, 제53권 3호, 41-78쪽.
- _____ (2016a),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창록·양현아·이나영 외(2016), 서울: 경인문화사, 109-128쪽.
- _____ (2016b),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0권 5호, 1-40쪽.
- _____ (2017),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 역사』, 제115권, 64-103쪽.
- 이재승(2015), “특집: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 사회』, 제49권,

1-31쪽.

전혜정(2016),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과 비실증주의 법개념론: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모색하며”, 『한국여성철학』, 제26권, 177-203쪽.

정영환(2016),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임경화 옮김, 서울: 푸른역사, 鄭榮桓(2016), 『忘却のための「和解」: 『帝国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 横浜: 世織書房.

정의기억연대(2018), 「2018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 자료집」, 비간행물.

최범(2017), “소녀상과 미술담론”, 「위안부 동원과 재현의 정치학」,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개최 심포지엄 발표문(2017.7.1).

프레이저, 낸시(2010), 『지구화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옮김, 서울: 그린비, Fraser N.(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하딩, 샌드라(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옮김, 파주: 나남, Harding S.(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rendt, H.(1968),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Viking Press.

_____ (2006),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New York: Penguin Books.

Collins, P. H.(2000), *Black Feminist Thought*, New York: Routledge.

Young, I. M.(2006), *Global Challenges: War,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for Justice*, Cambridge: Polity Press.

〈신문기사·잡지〉

『한겨레 21』, 2018.12.10, “출범 석 달 만에 위기 맞은 위안부 문제 연구소”.

『한겨레신문』, 2018.10.30, “13년 8개월 만에…대법 ‘일본기업은 강제징용 배상하라’”.

『한국일보』, 2017.6.21, “100개 학교에 ‘작은 소녀상’ 건립 성공한 장한 고교생들”.

〈인터넷 자료〉

화해치유재단(2017), “카드 뉴스”, <http://www.rhf.or.kr>(검색일: 2017.7.5).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2015), <https://www.facebook.com/radicalthird/posts/866399986775806>(검색일: 2016.6.20).

_____ (2017),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1619482>(검색일: 2017.7.1).

(논문 투고일: 2018.10.31, 심사 확정일: 2018.12.03, 게재 확정일: 2018.12.19)

〈Abstract〉

Implications and Task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s: From a Perspective of Feminist Justice Theory

Lee, Na-Young*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while the controversy ove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still under way and the victims are passing away, there is still serious disagreement and distortion of the situatio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ask what tasks remain for sympathizers and advocates of the victims, when the Abe administration in Japan denies the past and avoids legal responsibility by arguing for 'moral responsibility,' as it waits for the relevant parties to die out. How are we to transcend the dichotomy of traditional legal/moral responsibility while upholding the spirit of the victims and emphasizing our own responsibilitie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Iris Young's justice theory. First, the meaning of Young's 'political responsibility' is explored and the issue of sexual slavery in Japan is investigated through a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 However, since the domai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has been enlarged in the absence of legal criminal action, an alternative stratigraphic model of political responsibility linked to legal-moral responsibility is suggested.

Key word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ris Young, political responsibility, justice, feminism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